

제18735호 2016. 4. 7.(목)

【부 령】

- 환경부령제64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고용노동부령제15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3

【고 시】

-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3호(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 14
- 법무부고시제2016-134호(국적상실) 15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66호(201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6
- 환경부고시제2016-73호(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6
- 환경부고시제2016-76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8
-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0호(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 고시 제정)..... 22
- 특허청고시제2016-6호(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3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0호(도로구역결정<변경>) 3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2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4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6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0호(하천점용 허가)..... 7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1호(하천점용 허가)..... 7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2호(하천점용 허가)..... 7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하천점용 허가)..... 7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하천점용 허가)..... 7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8호(하천점용 허가)..... 72
-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2호(2016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정) 73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8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7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7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76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사설항로표지 신설<복구>) 77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8

(이면 계속)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저도도등 기능복구)	7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5호(동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7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9호(국적취득).....	8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0호(국적상실).....	8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국적취득).....	82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호(국적상실).....	82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국적상실)	8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8호(하천수사용 허가)	8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하천수사용 허가)	8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0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8호(‘16년도<‘15년 실적> 중앙·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8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0호(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5호(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8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교육부공고제2016-83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교육부공고제2016-87호(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교육부공고제2016-88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0
○교육부공고제2016-89호(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7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9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2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소재지> 등록)	93
○환경부공고제2016-96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3
○환경부공고제2016-281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4
○환경부공고제2016-28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환경부공고제2016-283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환경부공고제2016-2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환경부공고제2016-28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0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1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8호(신기술지정 신청).....	101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09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문화재청공고제2016-10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문화재청공고제2016-104호(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10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들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 나. 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능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 다.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 라.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 마. 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inkyuk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② 이정테크(주)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347, ② 02-577-1502

2. 명칭 :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등의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이하 NDM, Net Drainage Method)로서

재래식 배수재만으로는 장기간의 통수능 확보가 의문시되는 유입수 과다구간

토립자 및 지반보강용 주입재의 용탈에 의한 폐색이 우려되는 구간

연약지반 등 외부 압력 증대에 따른 배수재의 압착이 우려되는 구간

터널 입출구부 등 외기온도에 의한 라이닝 배면의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

갱문, 횡갱, 대피소 등 터널 단면 변화구간의 분리형으로 시공시 방수막의 열손상이 우려되는 구간 등

일반 배수재 이외의 추가 배수재나 드레인보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개소 및 공용중 유입수 등에 의한 장애발생 및 유지보수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는 터널에 대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 복합 배수재 적용기술

<범위>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로서 유입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등에 설치하는 일체형 및 분리형 배수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0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